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1월 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 나. 또한,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나.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역의 개선사항,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관광진흥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련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4, 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발체사항 1부.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행사(이하 “회의“ 라 한다)”란 상당수의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행사와 국내회의·행사(세미나·토론회·학술대회·심포지엄·전시회·박람회 기타 대규모 회의·행사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자”란 각종 회의를 주최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을 말한다.
5. “관광모니터”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관내 관광지역에서의 개선 및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6.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7.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숙박업소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를 말한다.
8. “중·저가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

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내·외 관광객유치 지원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시장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2.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참가자 중 시민을 제외한 회의참가자가 1일 200명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30명 이상인 회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의 참가자가 공중위생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관내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축제
2. 정치 및 종교행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4. 그 밖에 개별법 등에 의하여 지원이 금지된 회의

제6조(지원사항) 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홍보물
3. 예산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관광안내소 설치

제7조(종합관광안내소설치 등)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특산품의 전시·판매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관광모니터

제10조(관광모니터)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역에서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촉) ① 관광모니터는 관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

로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한다.

② 관광모니터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관광모니터의 위촉인원은 지역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임기) 관광모니터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13조(해촉) 시장은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린 때
2. 다른 시·도 또는 외국으로 이사한 때
3. 관광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 한 때
4. 관광모니터가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4조(신분증) ① 시장은 관광모니터가 원활하게 제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의 규격·모양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보상금) ①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보호)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한 때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제5장 관광사업 보조금

제17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1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관광업무 위탁

제20조(관광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또는 직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종합관광안내소 관리·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3.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
4.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

5. 관광기념품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 제2조(정의) -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22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 공중위생관리법 - 제2조(정의)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① 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특 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호텔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등급 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營業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營業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營業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營業을 말한다.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營業을 말한다.

8.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營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04-2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광객 유치,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등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

2.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

3. 미첨부 사유

-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종사원 교육 및 양성, 관광기념품공모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

4. 작 성 자

- 문화복지위원회 이 상 철 의원